

「圖書館局」新設을 提唱한다

—劃期的인 發展을 이룩하기 爲하여—



張 一 世

緒 論

무릇 어떠한 일이든지 組織的이 아니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수 없고 또 큰 效果도 期待키 어려운것은 當然한 일이다. 지난 十餘年間의 우리 나라 實情은 每事가 計劃이 없었으며, 더욱이 文化事業은 이 루 말 할수 없을 程度로 貧困한 政策과 拙劣한 處事로 말미아마 發展은 커녕도 리어 衰頹해 버렸다는 事實 亦是否認할수 없는 일이다.

筆者는 여기서 全面的으로 政府의 施策에 對하여 批判코자 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그中에서 우리 圖書館人들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部分만을 들어 論述하고 多少의 批判을 加함으로써 過去를 回顧하고 將來의 施策面에 反映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쓰는바이다.

1948年7月 法律 第1號로써 公布된 政府 組織法은 그 後 3次의 改正을 거쳐 1956年 2月 法律 第384號로써 改正公布 되었다. 이 法은 全文32條로 되어 있으며 그 中 文敎部에 關係되는 것을 살펴 보면 總務課와 普通教育局, 高等教育局, 技術教育局, 文化局 및 編修局으로 構成되어 있고 圖書館 關係는 文化局에 所屬되어 있다.

그러면 圖書館 關係 事務를 管掌하는 文化局을 다시 살펴 본다면 이 局에 社會教育, 文化保存, 藝術, 體育의 四課가 있고 圖書館 關係는 社會教育課의 所管으로 되어 있다.

社會教育課에서 管掌하는 事務는 成人教育, 國民思想의 研究指導, 靑少年 指導로 되어 있으며 圖書館 關係事務라는 뚜렷한 것은 찾아 볼수 없게 되어 있다.

여기에 根本的인 矛盾이 內包되고 있는 것이다. 圖書館이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運營하여야 하는것인지를 全然 모르는 사람들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證明하는 것이다.

이 事實만보더라도 文敎當局者들이 教育面에 對하여 얼마나 貧困한 知識의 所有者들이며, 特히 圖書館이란것을 理解치 못하는 것인가를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沒理解한 사람들에 依하여 樹立되는 圖書館 政策은 果然 어떠한 것일까? 이것은 새삼스러이 이야기 할 必要조차 없을만치 憊한 일이다. 마치 國立圖書館은 中央當局에서 쫓겨난 人士들의 定配處였고 左遷 當한 爲人들의 避難處였다는 것만을, 보드라도 알수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圖書館으로 流配됐을 때 그들의 머리 속에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圖書館이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圖書館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圖書館 運營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 머리 속에서는 獵官運動 以外の 아무것도 없었을 것은 뻔한 일이다.

沒理解하고 無誠意한 人士들에 의하여 움직여진 國立圖書館의 가는 길은「大衆에의 奉仕」「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使命」은 커녕 이와 正反對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위의 簡單한 一例는 圖書館의 眞實한 使命을 當局者들이 全然 理解치 못 한 데서 온 結果인 것이다.

圖書館의 意義와 目的에 對한 簡潔한 要約은 William S. Learned가 가장 要領있게 表現 했는데 그 줄거리를 紹介한 다면 다음과 같다.

「…人類의 幸福을 增進케 하는 文明의 進歩에는 知識의 發見과 傳播와의 두가지 作用이 緊要한 것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서로 相伴하여 作用하는 것으로서 빛나는 知識이 널리 頒布되면 비로써 새로운 發見을 낳게 된다. 安만 貴重한 知識이라도 널리 傳播되지 못한다면 一般에게 認識될 理致도 없고, 結局에 가서는 새로운 것을 낳지도 못하고 消滅할 것이다. 그러므로 傳播는 새로운 發見의 싹을 낳는 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그러한 知識을 傳播하는 一種의 機關中에서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으로 圖書館으로서의 存在價值가 크게 評價되는 것이다. 單只 圖書를 保存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18世紀以前의 思想과는 懸隔한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圖書館의 意義와 目的을 充分히 認識하는 사람들로써 圖書館일을 眞心으로 걱정할 수 있게 하고 위에 引用한 傳播의 使命을 効果있는 方法으로 하기爲한 政策을 樹立하여 이를 遂行할 수 있도록 圖書館局을 新設할 것을 提言하는 바이다. 이 圖書館局에서 하여야 할 일의 몇가지를 例로 들면서 이에 對하여 過去의 施策을 批判해 보는 것은 意義있는 것이므로 다음에 몇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圖書館局의 役割

圖書館局에는 最少限度로 學校圖書館課 大學圖書館課, 公共圖書館課, 特殊圖書館課의 四課를 두어야 할 것이며 이밖에 統括的인 事務를 擔當할 總務課가 있어야 할 것이다. 各級 圖書館의 性格과 對象과 運營方針이 各各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圖書館을 조금이라도 理解하는 사람이면 이 五課의 目的과 業務에 對한 區別은 손쉬운 일이다.

勿論 이러한 課의 組織만으로 모든 일이 組織의 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錯誤인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中樞的인 役割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기서 위에 이야기 한 各課에서 해야 할 일을 일일이 說明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簡單히 例를 들면 學校 圖書館課 같은 데서는 全國에 흩어져 있는 4,800의 國民學校와 1,600餘個의 中高等學校의 圖書館일을 돌보아야 할 것이며, 特殊圖書館課에서는 大學 또는 公共圖書館을 除外한 圖書館 例를 들면 官廳 圖書館이라든지 軍

關係 圖書館, 銀行 各團體等 圖書館에 關한 指導, 監査를 해야하며 大學圖書館 課는 研究圖書館으로서의 大學圖書館을 그리고 公共圖書館課는 國立圖書館을 爲 始하여 全國 各地에 設立되어야할 面立圖書館에서 부터 道立, 市立圖書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公共圖書館을 育成하여야 하며 또 監査, 指導를 해야할것은 말할것 도 없는것이다.

이러한 圖書館들을 爲한 各課를 살펴보면 모두 單局의 어떤 課보다도 더 큰 일들을 맡게되는것이다. 國民 하나 하나가 大學生이든 中學生이든 또는 公務員이든 勞動者이든 또는 失業者이든 婦女子이든 어느 누구나 圖書館과 關係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만큼 모든 國民은 다 圖書館과 密接히 聯結되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에서는 圖書館 事業을 學校라든지 道路 또는 水道같은것과 마찬가지로 市民들과 直接關聯되어있는 重要한 部門의 하나로 보고있다.¹ 이렇게 圖書館 事業을 重要視하는 理由는 圖書館이 學校나 道路, 또는 水道에 못지않게 國民들의 社會的, 教育的 水準을 向上시키는데 不可缺한 存在라는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미 百餘年前인 1849에 뉴-함프 一個 州에서는 처음으로 圖書館法을 發布했고 繼續하여 各州에서 이 法을 模倣하여 圖書館法을 制定하였다는것은 美國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發展을 이룩하게된 原因이지만 마사쥬-셋츠州같은 곳에서는 1850 年을 中心으로한 不過 數年 동안에 圖書館에 關係된 法律만 60餘條를 通過시켰다는것을보면 그들이 얼마나 市民의 知的水準向上에 努力하였는가를 能히 察할수

있다.

이러한 法的인 뒷바침과 아울러 國務省 教育局 (Board of Education)의 役割 또 至大하였다는것을 指摘치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 教育局이 圖書館을 도모기 시작한것은 1870年頃부터이지만 特히 1876年에 있어서의 이 教育局의 貢獻은 그 後의 美國 圖書館史에 一次 轉換을 가져올만큼 큰 影響을 주었으며 이로서 美國에 있어서의 正常的이고도 希望的인 圖書館活動을 期約케 되었든것이다. 이것은 同局에서 全國的인 圖書館狀況에 對한 細密한 統計와 아울러 圖書館에 關係된 重要한 論說을 發刊한 事實이다.³

이와같은 圖書館에 對한 刺戟은 더욱 圖書館 活動에 拍車를 가했으며 各州에서는 圖書館 監督局(Library Commission, 또는 Library committee)을 設置하여 州內各 圖書館 事業의 監督, 普及, 改善및 保護에 當하였고, 中央政府에는 圖書館 監督局(Board of Library Committee)을 두어 美國全土에 걸친 圖書館 事業에 對한 最高의 行政的인 立場에서서 그 保護와 獎勵에 當하게한것은 美國以外的 他 國家에서 그 例를 보지 못하는것으로서 括目할만한 事實인것이다.⁴

이와같은 制度가 생긴지 15年동안에 美國의 圖書館事業은 大端한 發展을 보이고 있으며 數字上으로 볼때 圖書館數 875에서 2,520이라는 急進的인 發展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위에 引用한 簡單한 事實은 우리의 圖書館 事業에 큰 光明을 던져 주고 있으며 美國과 事情이다른 우리에게는 우리社會 事情에 適合한 機關을 가지고 指導育成을 해 나아갈때에는 빠른 時日內에 보다 나

은 發展이 있을것이라는 自信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몇가지 重要한 것만을 주려서 簡單히 살펴 보고자 하는바이다.

1. 圖書館人에 對한 法的 保護

當局에서 해야 할 일은 一般 公務員과는 달리 圖書館關係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爲한 特別職制를 法律로써 制定하여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一般 公務員과 區別을 하여 圖書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對한 保護와 育成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圖書館에서 다루는 일이 特殊한 教育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것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는 까닭에 法律로써 이들을 保護하고있다.

아직 圖書館法하나 없는 우리 實情으로서는 이보다 앞서 圖書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爲한 法制定이 더욱 必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方面의 特殊 教育을 받은 사람이 그 專門分野에서 一生을 바칠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되고 이로써 그 分野에 對한 眞摯한 研究와 發展에 더욱 이바지 할수있게 될것이다.

이러한 專門職을 養成하는 機關에 對하여는 다음에서 簡單히 이야기 하겠거니와 圖書館은 特殊教育을 必要로 하는 機關인 고로 지금 당장에라도 圖書館에 關係되는 業務를 擔當한 一般公務員은 圖書館教育을 받은 人士 또는 多年間 經驗을 가진 사람들로써 代替되어야 할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더 效果를 걸을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標準圖書目錄의 作成

各級 圖書館에 標準이 될 圖書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한 이야기지만 얼마 前에 女高生의 自殺事件이 있던 後 이 原因에 對하여 여러가지 많은 論難이 있었으며, 그 中 特別히 그 學生이 읽은 文學作品이 話題에 올랐고 뒤이어 靑少年 學生들에 對한 讀書指導 問題가 新聞紙上을 번거롭게 한 일이 있다. 確實이 그 作品이 自殺 動機가 되었는지는 나로서 斷定 할 수는 없으나 하더간 讀書에서 받는 影響이 매우 크다는 點에 對하여는 異論할 餘地가 없는것이다.

特別히 感受性이 第一 旺盛한 靑少年들에게 미치는 讀書의 影響을 세삼스럽게 이야기할 必要가 없을만치 至大하다는것은 다 認定하는 事實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社會에 있어서 그들에 對한 讀書 指導의 問題는 단지 學校에 있어서의 몇몇 擔任先生들의 問題가 아니라 우리 國民 全體가 熟考하여야 할 社會的 問題인것이다.

民心은 解馳할때로 解馳해지고, 社會秩序가 極度로 混亂한 이저음 良心的인 圖書出版만을 期待한다는것은 어리석은 일 일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社會相에 便乘하여 各樣 各色的 不良 圖書가 市場을 뒤덮는 現狀을 가져오는것은 當然하다고 할것이다.

讀書로서 받는 影響과 所得은 어디까지나 無形의인 것이고 우리 눈으로 그 效果를 볼수 있거나 자로 갠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一般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이 웬만한 知識人들도 讀書에 對하여 그리 큰 關心을 가지지 않는것이 事實이지만 위에 例를 든 그 女高生의 境遇를 본다면 젊은 子女를 둔 家庭의 父母는 勿論이지만 全

國의 젊은 男女의 教育을 도맡은 文教部는 宜當 여기에 對한 適切한 對策을 세워서 할 것임을 두말할 必要가 없을뿐 아니라 그 結果로서 나타난 여러가지 樣相에 對하여 마땅히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當局者는 이에 對하여 한마디 辯明도 없는 것은 어찌된 셈일까? 個人的 讀書는 그야말로 自由란 말인가? 文教部는 責任이 없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標準圖書目錄의 必要性이 切實하게 要請되는 것이다.

지금 一般 家庭에서는 子女들에게 讀書를 勸하고 싶어도 勸할수 없는 實情에 있다. 하루 많은 不良圖書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良書를 가려 낼 것인가?

이것이 圖書館局의 各課에서 해야 할 業務中的 하나인 것이다. 美獨같은 安定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文教部 같은데에서 할 必要가 없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州政府 같은데에서 承認한 圖書目錄中에서 學校圖書館用圖書를 選擇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⁵ 그만큼 圖書의 選擇에 慎重을 期하고 있다는 것과 同時에 그만큼 靑少年의 讀書指導에 萬全을 期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實情은 더욱 時急하며 文教部가 아니고서는 到底히 이런 거창한 일을 效果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大學設置基準令中 圖書館 關係의 基準을 보면 學生 一人當 圖書 몇 卷이라고 規定되어 있으나 이것은 時期的으로도 또 實質的으로도 아무 效果가 없는 것이다. 또 中·高等學校 및 師範學校 設置基準令中 圖書館 關係部門을 보면 더욱 可笑롭기 限이 없다.

이러한 矛盾에 가득찬 部門은 위에 이야기하 目錄作成으로서 비로서 更正 되거

이다.

그러나 이러한 目錄作成은 短時日에 될 수는 없고 또 一定한 期間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出版物이 나오는 것이 限量이 없는 것처럼 날이 흐름에 따라 이 事業도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이 目錄이 順次的으로 나오에 따라 讀書指導도 安心하고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子女에게로 勸할 수 있는 것은 勿論 各級圖書館에 이것을 適用함으로써 基本的인 識書를 이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 이야기한 여러가지 理由로 말미암아 筆者의 所見으로서 이 目錄作成의 業務야말로 가장 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이러한 標準圖書目錄과 아울러 國家的인 出版物 總目錄이 必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 亦是 當局이 解決해야 할 問題中的 하나이다.

3. 圖書館員의 教育

文教部 認可로서 正式으로 運營되고 있는 專門 司書 教育機關으로서는 現在 延世大와 梨花女大 二校 뿐이라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다. 明年 봄부터 延世大 圖書館科 卒業生이 社會로 輩出될 것이나 이의 數는 매우 微微하며 梨大 圖書館學科 卒業生은 大學院 圖書館學科生 6名을 除外한다면 3年後인 1963年 봄에야 비로서 卒業生이 나오게 된다. 이렇고 보면 專門教育을 맡은 司書는 그 數가 當分間은 매우 적은 數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現在 勤務하고 있는 司書의 再教育方法으로는 圖書館協會 主催의 短期講習會가 1년에 1回 程度 있고, 延大에서 放學期間을 利用한 講習 程度이다.

위에 이야기한 司書의 教育 現況은 매우 遲遲不進한 狀態에 있으며, 아무런 綜合的인 計劃 위에서 案出된 것도 아니고 網羅된 것도 아닌 까닭에 그리 큰 效果를 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인 것이다.

圖書館이 가지고 있는 모든 文化財는 全部 圖書館員의 손을 거쳐서 비로서 活用된다. 充分한 活用을 爲하여는 活用할 수 있도록 充分한 準備가 必要하다. 準備가 되지 못한 것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圖書館員의 教育問題가 惹起된다. 各 圖書館에서는 없는 가운데에서도 圖書館費를 짜 내어서 圖書購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購入한 貴한 圖書들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過程에 對해서는 全然 理解가 없다. 受入된 圖書는 一定한 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그 圖書가 지닌 內容을 充分히 發揮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手續과 活用을 充分히 할 수 있는 사람은 專門教育을 받은 圖書館人뿐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圖書館 專門職養成이 美國같은데에서 매우 強調되고 있다.

大學이나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沒知覺한 人士들로 因하여 얼마나 많은 貴重한 文化財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는 圖書館을 몇 번 드나든 사람이면 곧 알 수 있는 일이다. 筆者가 보기에는 거의 藏書量의 十分之九以上이 死藏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推測하고 있다.

그만큼 圖書館員의 教育은 圖書館資料의 活用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大學圖書館 또는 特殊, 公共圖書館을 莫論하고 이 教育問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時急하고도 重要한 問題中の 하나인 것이다. 많은 資料를 購入할 수 없는 우리의 事情이 더욱 專門教育을 받은 圖書館員을 要求하고 있다. 專門教育을 받아야 圖書館本來의 使命을 充分히 살려서 效果있는 運營을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뚜렷이 證明되고 있는 일이다.⁷ 그러므로 綜合的 計劃에 立脚된 圖書館員의 再教育問題와 더불어 앞으로의 各級 圖書館發展에 副應하는 專門司書養成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結 論

위에 들은 몇 가지 例는 圖書館局에서 다루어야 할 일中的 不過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그 部分에 對하여 좀더 專門的인 檢討가 加해져야 할은 勿論이지만 現在 圖書館 關係를 主管하고 있는 文教部 自體에서 이에 對한 깊은 理解가 없이는 到底히 實現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多幸히 第二共和國이 誕生한 以後 眞實한 教育者들에 依하여 文教部가 움직여지게 된 것은 비로서 이제부터 正常的인 發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여주고 있거니와 그분들이 모두 圖書館의 役割과 使命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는 人士들이라는 것은 더욱 우리들 圖書館과 直接 關係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히 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에 큰 前進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政府機構는 앞에서도 暫間이야기한 바와 같은 많은 矛盾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지금 政府機構를 改編하기 爲하여 眞摯한 討議가 繼續되고 있다고 한다. 此際에 關係官들은 專門家의 助力을 얻어 根

本的인 改革을 斷行하기를 強力히 要請하는 바이다.

圖書館人の 한 사람으로서 거듭懇切히 바라는 바는 過去와 같은 過誤를 다시 밟지 않도록 留意하여 주기를 바라며 그와 同時에 우리나라의 劃期的인 文化向上을 爲하여 果敢한 施策이 있기를 衷心으로 期待하는 바이다.

1. Joeckel, Carleton B. A national plan for public library service, by C. B. Joedsel And Anry Winslow. Chicago, A. L. A., 1948. p. 60
2. Hessel, Alfred. A history of libraries, to. by Reuben Peiss. New

Brunswick, N. J., 1950. p. 102

和田萬吉 圖書館史

3. 和田萬吉 "
4. 毛利宮彥, 圖書館學序論 P. 33—34
5. Fago, Lucile F. the library in the school th ed. Chicago, A. L. A. 1947, p. 353—354
6. Burgess, Robert "미국의 도서관적 교육" 도협월보 v.i.no3.p. 7—9. 1960 P. 7—9. 5月號.
7.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New York, H. W. Wilson, 1944 p. 252—254
(筆者 梨大圖書館學科師講)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著 者 金斗弘 (慶南高等學校司書教師)
趙載厚 (慶南女子高等學校司書教師)
崔大林 (釜山師範學校司書教師) 外二人

發行處 慶尙南道教育研究所

現職司書·司書教師에 限하여 小部數를 頒布합니다 (頒實費圖 2,000圖)
協事務局에 現品이 있습니다.